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별표 3에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국방보안관리사, 함정손상 통제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 장구 관리사 (낙하산, 생환장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부사관 고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각 군의 항공장구정비 교육과정(부사관 초급/병 과정,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방보안관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군복무중인 사람으로서 국방보안관리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군복무중인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함정손상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제사		1. 함정손상통제사 2급 취득 후 3급함(인정범위 450톤급 이상) 이상 함정에 3년 이상 승조한 사람 2. 함정 손상통제훈련팀 교관화 과정 자격 취득 후 3급함(인정범위 450톤급 이상) 이상 함정에 5년 이상 승조한 사람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함정 손상통제훈련팀 교관화 과정 자격 취득 후 3급함(인정범위 450톤급 이상) 이상 함정에 1년 이상 승조한 사람 2. 3급함(인정범위 450톤급 이상) 이상 함정에 3년 이상 승조한 사람

별표 3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탄약안전관리사		탄약안전관리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탄약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군항공기 사고 구조사	1급	군항공기사고구조 관련 부사관 중급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2급	군항공기사고구조 관련 초급과정 교육(부사관 과정, 병 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4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탄약안전관리사		필기시험	탄약보급, 탄약저장, 탄약검사, 탄약정비, 폭발물처리
		실기시험	탄약구조, 탄약보급, 탄약저장, 탄약검사, 탄약정비
군항공기 사고구조사	1급	필기시험	소방법규, 군 항공기사고구조
	2급	실기시험	화재진압, 군 항공기사고구조
		필기시험	소방구조장비, 기초 소방활동, 소방차량 운영, 화재진압 기초, 군 항공기사고구조
		실기시험	군 항공기사고구조, 화재진압

별표 4에 국방무인기조종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방 무인 기 조종 사	무인 항공기	필기시험	항공기상, 공역통제, 정보자산운용, 운용체계, 무인항공기 운영규정
		실기시험	비행조종, 비상조치
	무인 비행장치	필기시험	비행이론 및 운용규정(항공법, 항공기상, 공역통제, 항공역학, 사고조사, 안전진단), 비행조종, 비상조치, 드론정비
		실기시험	비행조종, 드론정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u> <u> 으로 한다.</u>
<u><신 설></u>	<u>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u> <u> 및 2급으로 한다.</u>